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7
----------	------

201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11. 7.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6. 11.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 12.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6. 12. 11.)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6. 12. 21.)
 -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7년도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음
 - 사유는 현재 보유한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임
 - 참고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 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1조 1,446억 여원임
- 2017년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59억 3,065만원을 적립하고, 예상 이자수입 1억 9,714만원, 2016년도 적립금 59억 3,311만원 등 총 220억 6,090만원을 적립할 계획임
 -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교통영향평가, 건설사업관리 등에 55억 452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5억 5,637만원임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전문위원 엄지운)

1. 개 요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표 3-1〉 서울시교육청 기금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1	감채기금	2007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016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기금 설치·운용조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용하는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총 규모는 각각 0원과 220억 6,100만원임

〈표 3-2〉 2017년도 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A)	2016년 (B)	증감	
			증감액 (A-B)	증감률
감채기금	0	0	0	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2,061	5,933	16,128	271.8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 2017년도 감채기금의 조성규모는 0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3-3〉 2017년도 감채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7년도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감채기금	0	0	0	0	0	-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2)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재원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2016년 10월 27일 현재 지방채 미상환 잔액 1조 1,446억원 전액이 국가부담인 것으로 확인됨

〈표 3-4〉 지방채 발행 현황

2016. 10. 27.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사업연도)		차 입 액 (A)	상 환 액 (B)	잔 액 (C=A-B)
합 계		1,188,295	43,694	1,144,601
국가 부담	학교신설('13)	131,082	43,694	87,388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09 기금지방채차환('14)	182,629	0	182,629
	교원명예퇴직('15)	256,174	0	256,174
	유치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15)	268,763	0	268,763
	교부금차액보전(누리과정)('15)	137,722	0	137,722
	학교신설('15)	152,410	0	152,410

- 「지방회계법」 제19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2016.9.)」에서도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 운용 혁신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⁵⁾의 단서를 사유로 2015년도부터 동 감채기금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2017~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기금 운용계획에서도 감채기금 조성계획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치 또는 폐지⁶⁾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 기금총괄

-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⁷⁾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설치됨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이하 ‘건립기금’ 이라 함)의 존치기한은 2020년까지로 5년간 1,500억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5년간 943억원의 기금적립금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감채기금 조례 폐지 사례

- 4개 교육청(강원 대전, 제주, 인천) 감채기금 폐지
-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2017.1.1. 폐지 예정

7)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 : 1,344억원(신청사 1,247억원, 연수원 97억원)

〈표 3-5〉 건립기금 연도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립기금	149,887	5,933	22,060	48,655	44,105	29,134

주 2017~2020년은 '2017~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32)에 의함

〈표 3-6〉 교육비특별회계 상 건립기금 적립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금적립금 (구성비)	94,319	5,909 (0.1)	15,931 (0.2)	32,100 (0.4)	26,191 (0.3)	14,188 (0.2)

주 1. 2017~2020년은 '2017~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34)에 의함

주 2. (구성비) : 2016년은 제3회 추경예산액에 대한 건립기금의 비율이고, 2017년은 세출예산(안)편성액에 대한 비율이며, 2018~20년은 '2017~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28)에 의한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임

- 2017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165억 5,600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규모(59억 3,300만원) 보다 106억 2,300만원 증가하여 약 3배 정도 커진 규모임

〈표 3-7〉 2017년도 건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7년도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증감액 (B-A)	증감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5,933	16,128	5,505	16,556	10,623	179.0

- 2017년도 건립기금의 기금수지총액은 220억 6,000만원으로 2016년도(59억 3,300만원) 보다 161억 3,000만원 증가하여 약 4배정도 커진 규모임

〈표 3-8〉 2017년도 건립기금 기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7년 수입액	2016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17년 지출액	2016년 지출액	증 감	
				비율					비율
합 계	22,061	5,933	16,128	271.8	합 계	22,061	5,933	16,128	271.8
전입금	15,931	5,909	10,022	169.6	고유목적 사업비	5,505	0	5,505	순증
예치금회수	5,933	0	5,933	순증	예치금	16,556	5,933	10,623	179.0
이자수입	197	24	173	720.8					

2) 기금 수입·지출계획

- 2017년도 수입계획은 220억 6,100만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 59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9억 3,100만원과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1억 9,700만원임

〈표 3-9〉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	관	항	목	2017년 수입액	2016년 수입액	증감
수입 합계				22,061	5,933	16,1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864	5,909	15,955
		보전수입 등		5,933	0	5,933
		예치금회수		5,933	0	5,933
		예치금회수		5,933	0	5,933
		내부거래		15,931	5,909	10,022
		전입금		15,931	5,909	10,02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931	5,909	10,022
자체수입				197	24	173
		이자수입		197	24	173
		이자수입		197	24	173
		공공예금이자수입		197	24	173

- 동 기금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수입항목⁸⁾을 설정함
- 지출계획의 경우 220억 6,100만원으로 예치금 165억 5,600만원과 신청사 건립경비 55억 500만원(건설사업관리용역비 10억원,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41억 3,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3억원, 시설부대비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3-10〉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2017년 지출액	2016년 지출액	증감
지출 합계						22,061	5,933	16,128
일반 공공행정						16,556	5,933	10,623
일반행정						16,556	5,933	10,623
재무활동						16,556	5,933	10,623
보전지출						16,556	5,933	10,623
시교육청 금고예치						16,556	5,933	10,623
예치금						16,556	5,933	10,623
교육						5,505	0	5,505
교육일반						5,505	0	5,505
기관운영관리						5,505	0	5,505
교육행정기관시설						5,505	0	5,505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5,505	0	5,505
건설사업관리						1,000	0	1,000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4,130	0	4,130
교통영향평가						300	0	300
시설부대비						75	0	75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0	0	0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0	0	0

8) 수입항목 : ①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②기부금, ③용자원금회수, ④예치금회수, ⑤이자수입, ⑥기타 기금수입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12월까지 건축 인·허가를 전제로 그에 따른 소요경비(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용역 등)에 대하여 지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지난 2016년 5월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10월에 용산구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조치계획 보완요청⁹⁾에 따라 보완하여 2016년 12월에 재심의 예정인 바, 심의결과에 따라 지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¹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결과(권고사항)를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 건립기금은 2016년 8월에 처음으로 운용계획이 수립·운용되고 있어 금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시 2015년도 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나,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에 따라 2016회계연도 건립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는 2017.7.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분석결과 및 교육부의 점검 결과(권고사항)를 2018년도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 시 우리 의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조치계획 보완 요청(용산구청 도시계획과-11680, 2016.10.26.)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자 : 2016. 12. 21.(수) (제4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강구덕 위원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 별첨

◇ 첨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1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97
----------	------------

201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중 기타기금적립 삭감에 따른 전입금 감액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심사·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끝.

[붙임]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16. 12. 21.)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당초 운용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계획안
		소 계	증 액	감 액	
계	22,060,908	△4,000,000		△4,000,000	18,060,908
감 채 기 금	0	0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2,060,908	△4,000,000	0	△4,000,000	18,060,908

□ 수입 수정계획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운용계획안	수정 운용계획안	증감
계		22,060,908	18,060,908	△4,000,000
감 채 기 금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소 계	22,060,908	18,060,908	△4,000,000
	전 입 금	15,930,655	11,930,655	△4,000,000
	예치금회수	5,933,112	5,933,112	0
	기타수입	197,141	197,141	0

□ 지출 수정계획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운용계획안	수정 운용계획안	증감
계		22,060,908	18,060,908	△4,000,000
감 채 기 금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소 계	22,060,908	18,060,908	△4,000,000
	고유목적사업비	5,504,529	5,504,529	0
	예치금	16,556,379	12,556,379	△4,000,000